

헌법재판소

1. 구성 및 신분보장

<p>헌법 제111조 ②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,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.</p> <p>③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,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.</p> <p>④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.</p> <p>제112조 ①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,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.</p> <p>②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.</p> <p>③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.</p>
--

2. 헌법재판소의 권한 및 의결 정족수

권한	의결 정족수
<p>헌법 제111조 ①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.</p> <p>1.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</p> <p>2. 탄핵의 심판 (공무원의 파면여부 심판 → 민/형사 책임 면제x)</p> <p>3. 정당의 해산 심판 (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시 정부의 제소에 따라 정당의 해산을 결정)</p> <p>4. 국가기관 상호간,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(국가기관의 권한과 의무의 한계 규정)</p> <p>5.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</p>	<p>헌법재판소법 제23조(심판정족수) ①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. (→ 개회를 위한 심판 정족수)</p> <p>② 재판부는 종국심리(終局審理)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.</p> <p>1. 법률의 위헌결정, 탄핵의 결정,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(認容決定)을 하는 경우 (→권한쟁의 : 9인 중 7인 이상 참석, 과반수 찬성)</p>

3. 위헌법률심판

가. 관련 법령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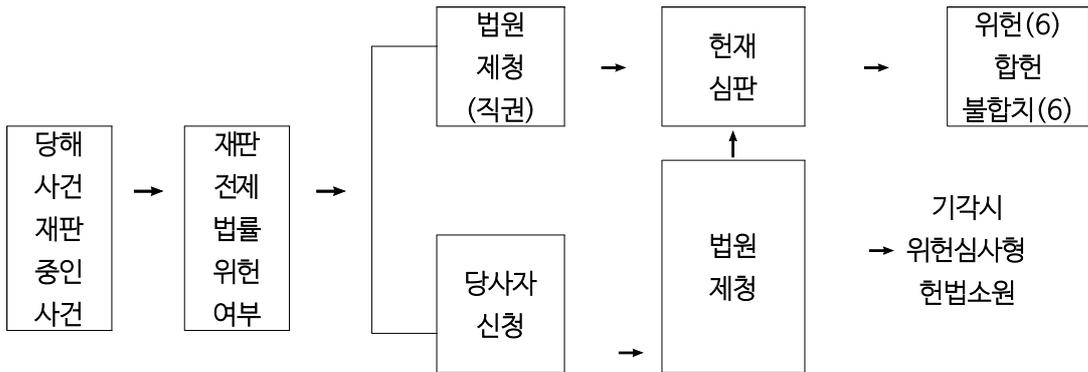
헌법재판소법 제 41조 (위헌여부심판의 제청) ① ㉠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㉡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㉢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의 심판을 제청한다.

나. 요건 사실 분석

- ㉠ 법률 : 형식적 의미의 법률(조약 포함), 긴급명령/긴급 재정 경제명령
- ㉡ 재판의 전제성(구체적 규범통제 ≠ 추상적 규범통제)
 - ①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
 - ② 위헌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소송 사건의 재판에 적용
 - ③ 위헌여부에 따라 당해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는 되는 경우

헌법재판소법 제42조(재판의 정지 등) ① 법원이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한 때에는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된다.

㉢ 심판 절차



다. 심판 결정 유형

- (1) 위헌 결정 : 9인 중 6인 이상의 찬성 → 당해 사건 적용 법령 효력 상실
- (2) 합헌 결정 : 당해 사건 재판 계속 진행
- (3) 헌법불합치 : 위헌 but 바로 판결시 법적 공백 사태 우려 → 일정시한까지 입법개선 촉구

형법 제269조 제1항(낙태죄) 등 위헌소원 [2019. 4. 11. 2017헌바127]

자기낙태죄 조항과 의사낙태죄 조항에 대하여 각각 단순위헌결정을 할 경우 임신기간 전체에 걸쳐 행해진 모든 낙태를 처벌할 수 없게 됨으로써 용인하기 어려운 법적 공백이 생기게 된다. 따라서 자기낙태죄 조항과 의사낙태죄 조항에 대하여 단순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각각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되, 다만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적용을 명하는 것이 타당하다. 입법자는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개선입법을 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, 늦어도 2020. 12. 31.까지는 개선입법을 이행하여야 하고, 그때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위 조항들은 2021. 1. 1.부터 효력을 상실한다.

라. 위헌 결정의 시적 효력

제47조(위헌결정의 효력) ①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과 그 밖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(羈束)한다.
②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. (장래효)
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. (당사자에게 유리)

4. 헌법소원

가. 권리구제형 헌법소원

(1) 관련법령

헌법재판소법 제68조(청구 사유) ① ㉠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(不行使)로 인하여 ㉡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. ㉢다만,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.

※ 9인의 재판관이 모든 국가 공권력 행사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
→ 지정재판부(3인)에서 본안전 요건(자기관련성, 직접성, 보충성 등)을 심리하고 미충족시 본안전 각하 결정

(2) 요건 사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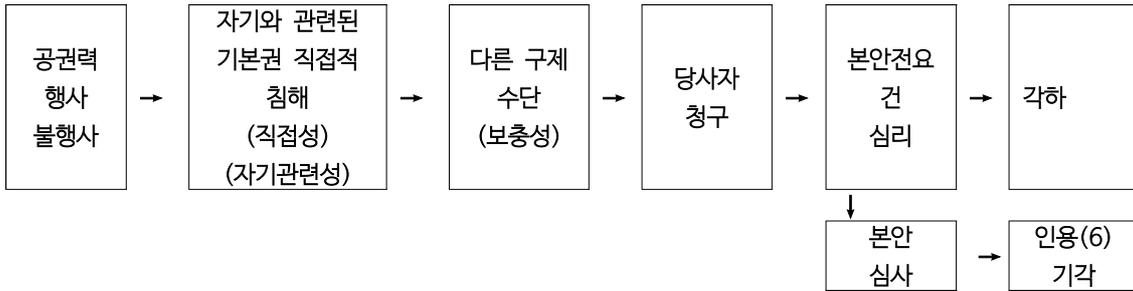
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(예 입법부작위) : 입법, 행정, 사법작용 등 모든 국가 공권력
→ 사인의 행위 x 법원의 재판 x

㉠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

→ 해당 공권력의 (불)행사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직접침해 (자기관련성, 직접성)

㉡ 다른 구제절차를 모두 거쳐야 (보충성 → 헌법재판의 최후수단성)

(3) 절차



나. 위헌심사형 헌법소원

제68조(청구 사유) ② 제41조제1항에 따른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.

※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에 대하여 법원이 제청신청을 기각한 경우에 대한 권리구제 수단
이므로 위헌법률심판에서의 요건 등이 모두 동일